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632112 손해배상(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구자희, 김도년, 이명희, 정공진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안팍
피고들 담당변호사 김지환
변 론 종 결 2026. 6. 24.
판 결 선 고 2026. 8. 2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2026. 8.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제품 설계, 예측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사출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의 업무가 필요한 설계·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D(구 E,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정보통신기기 및 주변장비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로 제품 기획, 직원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나. 피고 C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및 형사처벌

1) 피고 C은 2014. 9. 25.부터 2022. 7. 4.까지 컴퓨터(호스트네임 F) 1대, 태블릿 PC(호스트네임 G) 1대, 노트북 (호스트네임 H) 1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각 복제하였고, 2018. 4. 13.부터 2022. 7. 4.경까지 피고 회사의 I연구소에서 피고 회사 직원들이 올리는 도면결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 노트북에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2) 피고 C은 202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고약258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2022. 7. 4.경까지 화성시 []	
M []에 있는 주식회사 B []	I []연구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저작권자 A []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D []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회사 내 사무실에서 노트북 등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원고에게 사용료를 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급부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해, 피고 회사는 피고 C이 개인 노트북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고, 회사 직원들에게 프로그램 정품 사용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피용자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9. 9.경부터 2022. 9.경 사이에 수회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사용 예방 교육을 한 교육일지가 있고, 피고 회사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2023. 12. 29.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 및 검찰 불기소 의견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과 같은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 회사가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위와 같이 교육일지가 있다는 점만으로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와 같은 교육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 회사가 임원인 피고 C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 C이 개인 노트북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 회사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버전을 설치하여 전체 모듈을 무단으로 복제 및 설치하였고, 노트북 1대, 태블릿 PC 1대, 컴퓨터 1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각 복제하였다.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 정품이용료인 825,207,000원에 위 3대의 기기에 무단복제하였으므로 그 수량을 곱한 2,475,621,000원(=825,207,000원 ×3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 중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1) 구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413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7,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1억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27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일부 모듈만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료도 모듈별로 책정하여 받고 있다.

② 한 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그 판매금액에는 최초 1년간의 유지보수, 교육,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가격은 이러한 영구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금액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실제 고객에게 판매될 때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별 구매 수량, 범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정품 가격에서 할인율이 적용되어 그 사용료 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버전을 설치하다 보니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설치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를 복제 및 설치하여 업무 수행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 회사는 실제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 전체가 아닌 일부 모듈[J(구. K)', 'L]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저작권법 제126조의 손해액 산정

1)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과 이 사건 경위, 이 사건 프로그램과 피고들 업무 관련성 정도, 개별 모듈의 구성 및 가격,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방식, 피고 C이 실제 노트북에 설치한 프로그램만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만 원으로 정한다.

① 피고 회사는 2011.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중 모듈 J 영구 사용 라이선스 정품 2개를 5,200만 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②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을 도면 작성이 아닌 작성된 도면에 대한 결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모듈인 'J'의 영구 라인선스 가격이 2018. 5. 17.경 1개당 8,248,000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었다.

라. 책임의 제한 여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나(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침



저),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손해액 산정에 참작한 사정 이외에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피고들의 이 부분 책임 제한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침해행위일인 2018. 4. 1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8.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